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97

발의연월일: 2020. 11. 9.

발 의 자:이원택・김승원・송재호

오영환 · 윤재갑 · 신정훈

한병도 • 전재수 • 김종민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조합중앙회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감사위원장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하 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감사위 원장 호선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선출을 대의원회로 갈음하는 우회 규정을 차단하는 한편 회장 선출 시 1회원 1표 원칙을 명문화하며, 감사위원장의 자격을 감사위원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장의 선출을 총회에서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제5항 단서 신설, 제124조

제1항 단서 및 제129조제4항).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24조제1항 단서 중 "제54조제1항"을 "제130조제1항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54조제1항"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29조제4항 중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총회가 감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장 및 감사위원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5항 단서,

제124조제1항 단서 및 제1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장 및 감사위원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총회) ① ~ ④ (생 략)	제122조(총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앙회의 회원은 해당 조합	⑤
의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한	
표에서 세 표까지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u><단서 신설></u>	<u>다만, 제130조제1항</u>
	에 따른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
	회의 경우에는 한 표의 의결권
	을 행사한다.
제124조(대의원회) ① 중앙회에	제124조(대의원회) ①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다만, <u>제54조제1항</u> 을 준	<u>제130</u> 조제1항에 따른
용하는 제161조에 <u>따라</u> 임원의	회장의 선출을 위한 총회 및 제
해임을 위한 총회의 경우에는	54조제1항
그러하지 아니하다.	<u>따른</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 ③	제129조(감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감사위원장은 <u>외부전문가인</u>	④ <u>총</u> 회가 감사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⑥ (생 략)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